

채무조정안

☐ 신청인 기본정보

(단위 : 원)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	
직업	월평균 소득(A)	월평균 생계비(B)	금융비용(C) (타 대출 상환액)	가용소득 (D)

※ 월평균 소득(A)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 등의 합산을 말합니다.
월평균 생계비(B)는 한 달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.

☐ 채무조정 요청대상

채권금융회사	계약번호	대출일자	잔액(원)

☐ 채무조정 요청사항

(단위 : 원)

구분		조정 내용	
상환 유예	(Y / N)	희망 유예기간	
만기 연장	(Y / N)	희망 변제기간	
이자율 인하	(Y / N)	이자율	
		채무조정 전	채무조정 후
원금 감면	(Y / N)	원금	
		채무조정 전	채무조정 후
이자 감면	(Y / N)	☐ 이자 감면	☐ 연체이자 감면
기타 사항	(Y / N)		

년 월 일

신청인 본인 : (인)

□ 변제계획 불이행 및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

-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.
 1. 3개월 이상*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*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
 2.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
 3.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 4.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 및 은닉,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 5.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 6. 채무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, 변제계획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 7. 채무자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 8.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

년 월 일

채권금융회사 : 주식회사 오케이파이낸셜대부

대표이사 박 은 섭 (인)

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4, 2층 202호

(대표전화 : 02-1599-0919)